

## 접근성 요건 면제 신청

2014년 뉴욕 시 건물 조례

계획 검사원이 접근성 문제로 인해 건축물 설계도를 거부할 경우,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설계도를 수정하거나 뉴욕 시 건축부("DOB")로부터 면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. 면제를 신청하기로 한 경우, 시장 직속 장애인 담당실("MOPD")과 상담하셔야 합니다. 그러면 DOB에 권고문을 발부해 드립니다.

### 중요 참고 사항

- 신청서는 DOB에 제출해야 하며 접근성 면제를 승인받기 전에 작업/신청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.
- 모든 필수 서류, 양식 및 도면에는 정식 건축설계사(RA) 또는 전문 설계사(PE)의 서명 및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.



### Q: 접근성 면제를 MOPD에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?

- 접근성 면제 신청서 양식 PEO-1(<http://on.nyc.gov/peo1>).
- 신청자(RA 또는 PE가 신청자로 간주됨)가 작성한 커버 레터. 아래의 커버 레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.
- DOB에 제출한 모든 도면.
- 이의가 제기된 경우, DOB의 이의 제기서 사본.
- 외장 작업을 포함하는 면제 신청인 경우, 대지 경계선, 앞마당과 뒷마당, 인도가 정확한 치수 및 주석과 함께 나와 있는 배치도를 제출하십시오.
-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([www.nyc.gov/landmarks](http://www.nyc.gov/landmarks)) 신청서 및 승인서(필요 시).
- 신청에 대한 근거 사진, 설문조사, 도면.
-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,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출하십시오.
  - 사업의 성격
  - 사업체가 신규 설립, 확장 또는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
  - 직원 수
  - 설계자, 계약자 또는 전문 평가자가 준비한 작업 계획 비용 견적
  - 설계자, 계약자, 전문 평가자 또는 공급자가 준비한 면제 신청 대상 항목의 비용 견적
  - 신청인의 모든 부채 및 자산이 명시된 공인회계사가 준비한 재무 검토 제출한 서류는 소득 신고서(소득세 및 재산세), 현재 보유한 은행 계좌, 주식, 채권, 부동산 및 기타 재산, 일체의 소득원, 일체의 재고, 직원 급여, 대출, 모기지, 미지급금 및 미수금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.

**참고:** 모든 필수 서류 사본은 한(1) 부만 있으면 됩니다.



## Q: 커버 레터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?

-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로 인해 건물 조례를 준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서
  - 과도한 재정적 부담 발생 또는
  - 의도한 목적 달성 불가 또는
  - 물리적 또는 법적으로 불가능 또는
  - 의도한 목적 달성을 보장하는 대안 또는 안전 수준의 저하 없이 의도한 목적을 더욱 효율적, 효과적 또는 경제적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고려할 때 불필요함
  - 수반되는 변경이 제한적이어서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는 추가적인 이점이 미미함
  - 계획 중인 건축 작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
- 이용, 점유 또는 퇴거 관련 모든 변경 사항 명시
-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서류의 목록



## Q: MOPD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?

- 면제 신청서는 시장 직속 장애인 담당실 (The Mayor's Off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, 100 Gold Street, 2nd Floor; NY, NY 10038) 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(이메일,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한 제출 불가).
- 면제 신청서가 접수되면, 일반적으로 5 - 10 영업일(영업일은 주말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음) 안에 검토가 이루어집니다.
- 요청서를 검토하고 DOB에 권고문을 보낼 것입니다(요청 수락 또는 거부 관련). 또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- 권고문을 DOB에 보낸 후:
  - PEO-1 및 관련 도면에 소인을 찍습니다.
  - PEO-1 양식의 사본을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반송하고 관련 DOB 자치구 국장에게 사본을 전달합니다.
  - PEO-1 원본도 신청자에게 우편 반송합니다.
- 여기서부터는 신청자 본인이 DOB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

## Q: 신청서가 거부될 경우 MOPD에서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?

- 아니요. 하지만 신청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를 제시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제출할 경우, 상기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.
  - 당국의 의견이 명시된 PEO-1 양식 사본.
  - 서명과 직인이 있는 재제출용 새 PEO-1 양식.
  - 다시 제출하는 이유가 상세히 기술된 커버 레터.



## Q: 면제가 허용될 경우에도 미국 장애인법(ADA), 기타 연방, 주 및 지방법을 준수해야 합니까?

- 그렇습니다. 기타 모든 관련 법규 준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. ADA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면, 미국 접근성 위원회(United States Access Board)에 (800) 504-0301번으로 연락하여 추가적인 지침을 요청하십시오.